

# 공단 연구개발(R&D) 제안창구 운영에 관한 지침

관리부서: 기술혁신팀

제정일자: 2020. 2. 26.

시행일자: 2020. 4. 1.

**제 1 조(목적)** 이 지침은 부산시설공단(이하"공단"이라 한다)의 연구개발(R&D) 제안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공단 관리시설 현장실증(Test Bed) 지원에 관한 방법·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정의)**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현장실증(Test Bed)은 공단 운영·관리하는 유지관리 시설물로서 지원가능한 모든 시설물 (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·장비·설비·빅데이터 등 포함)을 말한다.
- ② 연구개발(R&D) 제안창구는 공단 관리시설을 현장실증(Test Bed)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(R&D) 응모제안서(이하 제안서, 별지1)를 제출 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창구이다.
- ③ 제안자는 공단 시설물을 현장실증(Test Bed) 장소로 제공·지원받을 목적으로 연구개발(R&D) 제안창구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.
- ④ 수요부서는 연구개발(R&D) 현장실증을 보유하고 제공하는 부서(팀·사업소)를 말한다.
- ⑤ 관리부서는 제안창구를 운영하는 기술혁신팀을 말한다.

**제 3 조(제안 등의 절차)** 제안서 평가절차(별지7)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제안자는 양식에 따라 제안서(별지1)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부서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수요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.
- ③ 수요부서는 제안서를 검토하여 관리부서에 검토의견서(별지2)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관리부서는 제안서의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연구개발(R&D) 제안평가 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하고 제안서의 평가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제안자는 현장실증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- ⑥ 관리부서는 현장실증이 종료되면 성공여부에 대하여 연구개발(R&D) 제안평가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제안서의 평가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 4 조(연구개발 제안창구 이용 생략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제안창구를 이용한 제안평가 위원회를 생략하고 지원 할 수 있다. 다만 관리부서와 수요부서는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- ① 연구개발(R&D)을 목적으로 공단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
- ② 국가 연구개발(R&D) 사업공모로 부산광역시와 공단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경우
- ③ 긴급한 연구개발(R&D) 사업공모로 수요부서의 의견수렴 및 제안평가위원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

**제 5 조(수요부서 의견수렴)**

- ① 수요부서에서는 제안서 및 현장실증 결과에 대하여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, 공단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, 부적합(현장실증 결과는 성공, 실패)을 명시하여 검토의견서(별지2 또는 별지5)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부서는 수요부서의 의견이 적합한 경우에만 제안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**제 6조(위원회의 구성)** 제3조 ④항에 의한 제안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

- ① 위원회는 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, 위원장은 안전혁신본부장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내·외부위원 5인으로 하고,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.
- ③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3급 이상 기술직 직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외부위원은 부산시설공단 시설물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혁신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서, 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계획, 평가위원 명단 등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평가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7 조(제안계획 및 현장실증결과 발표)**

- ① 제안자는 평가 위원회 운영 당일 10분간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와 수요부서에 3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다.
- ③ 제안자는 위원회의 질문이 끝나면 회의장 밖으로 퇴장한다.
- ④ 제안자가 퇴장한 후, 수요부서의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.

## 제 8 조(발표심사 및 현장실증 평가)

- ① 제안 평가 위원회는 제안자의 제안발표와 수요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발표 심사 항목(별지3)과 현장실증 평가 항목(별지4)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의 제안발표 심사와 현장실증 평가의 결과로 평균점수가 70점(100점 만점)이상의 경우 제안자의 제안을 채택하며, 현장실증 평가는 성공으로 결정한다.

## 제 9 조(심사결과 통보)

- ① 관리부서는 제안 평가 위원회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, 수요부서와 제안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② 제안서가 채택된 경우 수요부서에서는 공단 관리시설을 현장실증(Test Bed)로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## 제 10 조(사후관리)

- ① 제안자는 수요부서 또는 관리부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제안자는 제안발표로 채택된 계획과 다르게 수행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협약무효와 함께 제안자 부담으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안자는 관리부서에 매월 1회 현장실증(Test Bed)에 대한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하고, 관리 부서는 수요부서와 허위(당초 계획과 수정·보완 사항 등) 작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④ 제안자는 수요부서와 관리부서에 공단 관리시설을 현장실증(Test Bed)으로 활용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고, 공단 관리시설을 현장실증(Test Bed)로 활용한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 등재지) 또는 학술발표회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
- ⑤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현장실증 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한다.

## 제 11 조(현장실증평가)

- ① 제안자는 현장실증이 종료되면 성과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현장실증 평가는 제5조(수요부서 의견수렴), 제6조(위원회의 구성), 제7조(제안계획 및 현장 실증결과 발표), 제8조(발표심사 및 현장실증 평가), 제9조(심사결과 통보)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 한다.
- ③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실증 사실 확인서(별지6)를 발급하여야 한다.

【별지1】

## 공단 관리시설 활용 연구개발사업 제안서

접수번호	(공란)			
기술명				
기술분야	- (예시: 토목, 건축, 녹지, 기계, 전기, 전산, 통신, 환경)			
활용시설	- TEST BED로 활용할 시설명 (예시: 영도대교 아스팔트 박층포장)			
활용기간	- 협약일로부터 12개월간			
기술개요	- 배경 및 기술개요			
대표그림	-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설계/장비등의 사진 또는 모식도			
특징	- 도전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및 특징 -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적용 용이성			
기대효과	- 기술의 우수성 및 경제성 등			
기술 제안기관	기업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		
	제안자 이름		부서/직위	
	전화번호		이메일	



○ 실증의 목표 및 방법

- 실증 방법, 실증 목표달성도 평가지표

주요 지표	단 위	최종 실증목표	비교 수준 (표준규격 등)	가중치 (%)	객관적 측정방법 (증빙방법)
(예시) 미세먼지 밀도 저감		설치전 대비 30% 감소	-		현장에서 미세먼지 밀도 측정

- 사업종료후 기술의 소유권, 사용권, 유지보수(하자기간 포함) 관리에 관한 사항
- ※ 실증사업 종료 후, 최종목표를 달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량화 혹은 정성화 된 목표치 기술
- ※ 제안 해결책에 대한 현장 실증 및 평가 계획 서술
- ※ 결과보고서 제출시 최종목표 달성여부 명기 (정량목표는 원칙적으로 외부 시험기관 공인인증서 제출)

#### 4. 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(1P 이내)

- 부산시설공단 관리시설의 현장실증으로 발생하는 공단의 기대효과
  - ※ 실증 후 해결책의 확산/이용에 따른 사회적/경제적 기대효과
  - ※ 기술제안에 따른 공단의 예산절감 사항/ 개발기술의 이전 / 기타효과

#### 5. 기술 사업화 계획(2P 이내)

○ 기술 단가 (산출근거 포함)

규격	가격	단위	비고

○ 국내·외 관련 제품 및 시장현황

- ※ 국내·외 관련제품의 개발 현황 및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, 예상되는 시장의 규모 및 수요에 대해 기술

○ 판매전략 및 사업화 방안

- ※ 실증사업 이후 기술의 마케팅·판매전략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, 객관적으로 서술

○ 파급효과

- ※ 기술의 공급을 통하여 예상되는 매출과 수익성 목표 및 일자리창출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서술

#### 6. 기술공모 제안기관/대표/개인 제안자 및 협력기관(1P 이내)

제안기관	성명	부서	직함(직급)	전화번호	이메일

- ※ 제안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상호명 및 대표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
- ※ 사전검토 및 평가결과는 이메일 전송(결과통보)

【별지2】

## 연구개발 제안 검토의견서

(수요부서용)

건명			
위치			
요청일		문서번호	
결과통보일		처리완료일	
○ 검토결과 : 적합 또는 부적합			
○ 검토내용			
- 혁신성 :			
- 우수성 :			
- 기여도 :			
- 파급효과 :			
- 종합의견 :			
○ 검토자		○ 확인자	

【별지3】

## 제안 발표 심사 평가표

○ 제안명: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지표	평가점수
합계		(100점)	
기술성 (30)	혁신성(10)	-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(5) - 첨단성, 독창성 및 창의성(5)	
	우수성(10)	- 기존기술대비 성능수준(10) (효율, 정확도, 안전성 등)	
	완성도(10)	- 기술 완성도(5) - 현장적용 가능성(5)	
사업성(20)		- 확산 및 보급 가능성(5) - 경제성 및 공익성(5) - 기술사업의 지속가능성(5) - CEO 의지(5)	
적합성(30)		- 질의응답 및 보완내용(10) - 기대효과(10) - 현행법 규제 적합성(10)	
가능성(20)		- 실증계획의 적절성(10) - 실증평가 수행 가능성(10)	

2020. . .

평가위원 : 홍 길 동 (서명)

연구개발 제안평가 위원회 위원장 귀하



【별지4】

## 현장실증 결과 검토의견서

(수요부서용)

건 명			
위 치			
요 청 일		문서번호	
결과통보일		처리완료일	
<p>○ 검토결과 : 성공 또는 실패</p>			
<p>○ 검토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실증사업 결과물의 목표 달성여부</li> <li>- 실증사업 과정의 적정 :</li> <li>- 수요부서(기관)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:</li> <li>- 공공 도시문제 해결 및 서비스 개선 여부</li> <li>- 종합의견 :</li></ul>			
○ 검토자		○ 확인자	

【별지5】

## 현장실증 결과 평가표

○ 제안명:

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점수
합계	(100점)	
기술성(40)	- 실증사업 결과물의 목표 달성도(20)	
	- 실증사업 과정의 적정성(20)	
사업성(60)	- 공공 도시문제 해결 및 서비스 개선(30)	
	- 수요기관 반영사항(30)	

2020. . .

평가위원 : 홍 길 동 (서명)

연구개발 제안평가 위원회 위원장 귀하

【별지6】

## 현장실증 사실 확인서

실증기관	감사, 을사, 병사, 정사 등
실증위치	00대교 3번교각
실증기간	2000. 00. 00. ~ 2000. 00. 00.(00개월)

○ 현장실증 주요내용

위 기술(기관)은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중인 00시설에서 해당기술 현장실증을 실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.

2000. 00. 00.

부산시설공단 이사장 (직인)

## 공단 연구개발(R&D) 제안창구 운영 흐름도

